

희망저축계좌 | 사업 안내문

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○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| |
|---|
| <p>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 유지형 제외) •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 유지형 제외) •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•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|
|---|

□ 가입 및 유지기준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**생계·의료 수급가구**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(단위: 원/월)

| 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기준 중위소득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 |
| 가입 기준* (기준 중위소득 40%) | 1,025,695 | 1,679,717 | 2,143,614 | 2,597,895 | 3,022,688 | 3,422,381 | 3,806,060 | |
| 유지기준 | 소득상한 | 5,359,036 | 5,359,036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| | 소득하한 | 100,000 | | | | | | |

*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%, 근로·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□ 해지요건

| 구 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급 | 만기 | 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 |
| | 중도 | |
| 일부지급 | 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| • 만기성공금 지급 (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+이자) |
| 환수 | 만기 | 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 |
| | 중도 | |

□ 유의사항

○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~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*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*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[참고] 2026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

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월 | '25.12.23(화)~'26.1.22(목) | 7월 | 6.23(화)~7.22(수) |
| 2월 | 1.23(금)~2.23(월) | 8월 | 7.23(목)~8.24(월) |
| 3월 | 2.24(화)~3.23(월) | 9월 | 8.25(화)~9.22(화) |
| 4월 | 3.24(화)~4.22(수) | 10월 | 9.23(수)~10.22(목) |
| 5월 | 4.23(목)~5.22(금) | 11월 | 10.23(금)~11.23(월) |
| 6월 | 5.23(토)~6.22(월) | 12월 | 11.24(화)~12.22(화) |

○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

- 희망저축계좌 I 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(최소 7일 전)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·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, 반드시 관할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참고사항

-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관할구청과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